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

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 11.)

1. 심사 경과

가. 2005. 11. 7 : 사천시의회사무국

나. 2005. 11. 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3호)

다. 2005. 11. 10 :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이유 요지(회계과장 유재석)

가. 제안이유

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,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취득(변경분)

취 득 사 유	구분	필지	면적 (m ²)	예정가액 (천원)	담당 부서	비고
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추가 매입	계		772.10	356,761	총무과	
	토지	7	403	192,110		
	건물	4동	369.10	164,651		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
- 지방재정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필상)

-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,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
 - 취득코자 하는 토지 서동 273-2번지 대지 63㎡ 외 6필지 340㎡와 건물 서동 273-2번지 및 274-1번지 상의 1가구 벽돌주택 190.75㎡ 외 2가구 140.95㎡와 1가구 목조주택 37.4㎡임.
 - 상기 토지와 건물은 현재 착공 중에 있는 동서동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와 연접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